비밀유지계약서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SDI"라 함)와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이하 "IPS"이라 함)는 태양전지용 Ag Paste 평가 관련 공동기술개발 참여 여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 개시 여부등을 검토함에 있어, 상호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本 契約"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本 契約의 目的)

- ① SDI와 IPS는 태양전지용 Ag Paste 평가 관련 거래의 가능성에 관한 검토(이하 "契約業務"라 함)를 협의 추진하기로 하며,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제공된 秘密情報(이하 제2조에서 정의함)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② SDI와 IPS는, 契約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秘密情報를 本 契約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호 교환한다.

제2조 (秘密情報)

- ① 本 契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秘密情報를 제공한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함)가 秘密情報를 수령한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함)에게 제공한 일체의 영업비밀, 영업방법 및 판매, 생산 및 기술, 테이터와 노하우, 발명, 디자인, Spec, 제작방식, 기계, 샘플, 연구개발 및 연구계획, 전략, 사업전망의 예측, 장래 제조될 생산품, 제품 및 인적자원, 경영관계, 실제적 잠재적 고객명단, 장래에 발생 가능한 양측 사이의 사업상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이에 부수된 정보(이하 "秘密情報"라 함)를 말한다.
- ② 본조 제1항의 秘密情報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기밀", "대외비", "영업비밀",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 기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문구를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本 契約에 따른 秘密情報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정보수령자에게 위와 같은 문구의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 후 30일 내에 이를 秘密情報로 해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로부터 秘密情報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秘密情報의 目的)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秘密情報를 契約業務 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정보수령자가 계약업무와 관련한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보제 공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4조 (知的財産權)

- ① 本 契約 체결 전에 정보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은 정보제공자의 소유로 남아 있고, 本 契約 및 本 契約에 의한 秘密情報의 제공이 정보수령자에 지적재산권을 이전 또는 실시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② 本 契約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秘密情報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秘密情報의 提供對象者)

- ① 정보수령자는 秘密情報를 기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임직원에게만 秘密情報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범위는 본건 契約業務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 원에 한정된다.
- ② 본조 제1항 이외의 주주, 임직원, 전문 컨설턴트, 에이전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秘密情報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반드시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秘密情報를 제공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제공 대상자에 대하여 本 契約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수시로 주지 시켜야 한다.
- ④ 제공대상자에 의한 秘密情報의 공개, 누설,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6조 (秘密維持義務)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本契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출판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本契約을 체결한 사실, 本契約의 내용, 本契約 상의 秘密情報에 대하여 이를 공개, 누설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수령자는 秘密情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秘密情報를 가공, 변환, 개선하거나 복사, 재 생산, 제본 또는 그 실용성을 시험하거나 샘플을 분석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정보수령자가 이에 위반하여 가공, 변환, 개선하여 획득한 샘플분석 자료 기타 일체의 변화된 정보 등(이하 "가공정보 등"이라 함)을 생성하는 경우에 그 "가공정보 등"의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 귀속된다.
- ④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1. 秘密情報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 2. 秘密情報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 3. 秘密情報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 한 일체의 물건

제7조(秘密維持義務의 例外)

다음 각 호의 정보는 秘密情報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수령자가 부담한다.

- 1.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기 이전에 이미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2.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대중에 공개된 정보
- 3. 정보수령자의 공개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정보
- 4. 정당한 權原을 가진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
- 5.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秘密情報를 이용하지 않고 목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제8조 (契約期間과 解止)

- ① 本 契約의 유효기간은 2016년08월05일부터 2018년 08월04 일까지로 한다.
- ② 각 당사자는 本 契約이 계약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 더라도 그 이전에 제공받은 秘密情報에 대하여 本 契約 제10조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本 契約 상 의무를 진다.

제9조 (不可避한 情報 提供)

- ① 정보수령자가 법적 또는 행정상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秘密 情報를 제3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보수령 자는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따라 제3자에게 秘密情報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 수령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0조 (秘密維持期間 등)

- ① 秘密情報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本 契約 상의 비밀유지의 무는 본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5 년 간 존속한다.
- ② 전항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각 당사자는 契約業務 수행으로 발생 또는 파생된 개발 결과물, 연구결과와 DATA, 업무협력 결과물 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급,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1조(秘密情報의 返還)

- ①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모든 秘密情報 원본 및 그 사본을 모두 정보제공자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후 그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반환 및 파기대상에는 정보수령자가 秘密情報를 이 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기타 여하한 문서도 포함 된다.
- ③ 본조에 의한 정보수령자의 반환(파기)절차 및 처리결과 확 인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SDI: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남 성

제12조 (損害賠償)

정보수령자가 本 契約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한다.

제13조 (獨立性 및 法的 效力)

- ① 本 契約의 조항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정 조 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 력을 지닌다.
- ② 本 契約은, 本 契約에 의해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담은 것으로, 本 契約 체결 이전 에 당사자 간의 本 契約의 주제와 관련한 모든 합의는 本 契約으로 대체된다.

제14조 (紛爭解決)

- ①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 ② 本 契約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5조 (契約變更 및 終了)

- ① 本 契約은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추가, 변경, 파기 될 수 있다.
- ②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本 契約에서 규정하는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써 本 契約을 종료시킬 수 있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공인된 대표장(또는 대리인)의 상호 기명(또는 서명) 날인 후 1부적 보관한다.

2016 년 9월 20일

IPS: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변 정 우

